

	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46		
		제정일	2021. 04. 22.		
		개정일	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사무처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‘본대학’이라 한다)에서 『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』 및 『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』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·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한다.

1. 단독 활용 장비의 판정 및 해제
2. 공용 활용 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
3.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·유휴·불용장비의 판정, 자산 이관 및 처리
4. 장비특성, 활용기간,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(구매·개발·임대) 검토 및 결정
5. 단가 3천만원 이상의 고가장비 구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결정(다만, 순수 연구개발 사업 및 시설장비구축사업으로 구축하는 장비는 자체 심의대상에서 제외)
6. 『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』에 의거하여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7.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본대학 교원 및 교외인사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외위원은 총 위원수의 100분의 20 내외로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에 의하여 신규로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4조(운영) ① 위원장은 심의 및 조정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심의 및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세칙)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	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46		
		제정일	2021. 04. 22.		
		개정일	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사무처

제6조(기타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』, 『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』, 『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』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